



보도시점 2025. 12. 23.(화) 12:00 / 배포 2025. 12. 22.(월) 08:30
< 12. 24.(수) 조간 >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

- 지주회사 제도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기여, 대표적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 및 옥상옥(屋上屋) 지분구조 등은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 지주회사 매출 중 배당수익이 51.5%, 상표권 사용료 수취 등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편법적인 이익의 이관 수단으로 활용 여부 지속적인 감시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하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의 운영효과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수익구조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공개해오고 있다.

※ (분석대상) '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중 총수 있는 전환집단 43개

- 공시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집단(동일인이 법인인 집단(「포스코」, 「농협」) 제외)

'25년 공시집단(92개) 중 전환집단은 그 절반에 달하는 45개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16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 ('16) 8개 → ('18) 22개 → ('20) 24개 → ('22) 31개 → ('24) 43개 → ('25) 45개

1)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 현황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서 전년(24.7%,

47.7%)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16년 이래로 10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43개)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27.7%, 46.9%)은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32개)(24.1%, 43.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출자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6단계로서, 지난 10년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계열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환집단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계열사 또는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계열사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 집단별 최다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임

** 전환집단의 경우에도 지주체제 밖에 계열사가 존재하고 행위제한에 대한 유예기간 등으로 인해 전환집단의 출자단계가 3단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음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32건이고,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384개)의 약 60%(232개)에 달하는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소유·출자구조는 대체로 투명해졌으나, 여전히 국외계열사를 통한 법상 행위제한 규정의 우회가능성과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유인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②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

아울러 체제 밖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상당수 존재(26개)하였는데, 해당 회사가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은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통제하는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2) 내부거래 현황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16년: 16.0% → '25년: 12.35%)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총수 있는 일반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눈에 띄는 변화('16년: 12.5% → '25년: 11.38%)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가 전환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 유지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존 41개 전환집단* 중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반도홀딩스」(7.12%p)였고,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셀트리온」(△61.54%p)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간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큰폭으로 증가(58.5%p)한 점이 눈에 띈다.

* 올해 공시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집단(「엘아이지」, 「빗썸」) 제외

3) 수익구조 현황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1.5%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 배당수익의 비중이 70% 이상인 지주회사는 (주)농심홀딩스(100%), (주)티와이홀딩스(99.9%), 오씨아이홀딩스(주)(96.0%), (주)영원무역홀딩스(87.4%), 하이트진로홀딩스(주)(84.4%) 등 11개사였고, 반면 (주)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주)(17.1%), 에스케이(주)(22.2%) 등 9개사는 배당수익의 비중이 30% 미만으로 낮았다.

또한 30개 회사는 배당외수익을 수취하고 있었는데 그중 에스케이(주) 등 15개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3개 항목을 모두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료였는데 그 합계액이 1조 4,040억원으로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일집단 대비 약 534억원(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지주회사들이 배당수익

이외에도 다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 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 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범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별첨>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보고서

담당 부서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음잔디	(044-200-4842)
		담당자	사무관	김종선	(044-200-4852)
			조사관	강경훈	(044-200-4851)